메爬⋒┕양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5회 (02/04)

- 1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목이 전 답, 과수원이 아닌 토지(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)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8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 ()
- 2.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경작을 한 기간이 5년이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본다. ()
- 3. 꿀벌 15군을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. 따라서 농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에 해당한다. ()
- 4.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. ()
- 5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 시설의 설치,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. (
- 6. 도시개발구역을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()
- 7.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자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 ()
- 8.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(토지소유자 또는 조합)가 도 시개발구역 지정·고시일부터 2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. ()
- 9. 도시개발구역이 지정·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본다.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)
- 10. 도시개발구역안의 경작지에서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. (

빠뺜₩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,X)

부동산공법 고상철 교수

5회 (02/04)

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**1. (X)** 8년 미만이 아니라 3년 미만이다.
- 2. (0) 지목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로 본다.
- 3. (0)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이므로 15군을 사육하므로 농업인이다.
- 4. (X)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(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)이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건축물소유자 는 해당사항에 없다.
- 5. (X)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의 경우이다.
- 6. (0)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워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나 3가지 경우에는 지자체 등 이 시행자가 된다. 맞는 지문 이다.
- 7. (X)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이지 지자체 등이 시행자 로 지정되는 사유가 아님에 유의 할 것.
- 8. (X) 1년 이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.(2011년 기출) 시행자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다.

① 미착수 2년	
② 전부를 환지방식 토지소유지	or 조합이 1년 이내 인가신청 X, 연장:6월
③ 행정처분	시행자 지정 ¬의 취소 실시계획인가 □
④ 시행자의 부도·파산 사업 X	

- 9. (0)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제할 필요가 없다.
- **10. (X)** 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.